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건물 16층 (04518) / 전화 (02)2670-9209~10 / 전승 (02)2670-9213 / E-mail : election@kctu.org



문서번호 : 민주선거 1121 - 186호

시행일자 : 2020. 12. 30.

수 신 : 민주노총 규율위원장

참 조 :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실무 담당자

제 목 : 2020직선 규정위반 선거운동 제재 건 중 규율위원회 제소의 건

백만의 참여, 함께하는 민주노총!

1. 2020년 제2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94조(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제6항에 따라, 2020직선 선거운동 규정위반 제재 사건 중 규율위원회에 제소가 필요한 네 건의 사건을 확정하였습니다.

2. 아래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붙임으로 제출하니 규율위원회 제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p>전교조 전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남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이영관, 노성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지부장 김기창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노재욱</p>
--

※ 붙임 : 징계의결요구서(4부, 각 1쪽)〈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징계의결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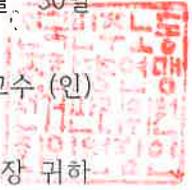
대상자	성 명	정남희
	소 속	전교조 전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정남희)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길(인후2동) 17 2층 (063-275-8035)
위반조항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징계사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와 함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선거권자에 배포되는 홍보물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규정위반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면서도, 동시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민주노총 임원후보에 투표를 권유하는 선거운동 문안을 그대로 선거권자에 문자메시지로 배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약 61조 및 상벌규정과 선거관리규정 94조 6항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규율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계의결요구서

대상자	성명	이영관, 노성민
	소속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대표자 주인구)
	주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0 (063-260-5081)
위반조항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50조(선거운동 금지사항), 제51조(투표 방법)	
징계사유	징계 요구 대상자는 현장투표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매우 큼에도,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투표소를 비우거나 선거인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선거사무 관리기준을 위반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약 61조 및 상벌규정과 선거관리규정 94조 6항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규율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계의결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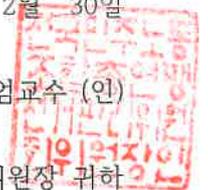
대상자	성 명	김기창
	소 속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대표자 김기창)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중앙이노테크 제1층 106,107호 (031-722-2929)
위반조항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운동기간),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50조(선거운동 금지사항), 제51조(투표 방법)	
징계사유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이 금지 된 투표기간에, 선거 중립의무를 가지는 단위조직의 공식적인 공간인 현장팀 단체소통방을 통해, 특정 후보의 홍보물과 특정 후보에 투표할 것은 권유하는 '경기도건설지부 투표지침'이 게시된 것이 확인됐으며, 해당 '지침'에 따른 투표 완료 인원을 팀별로 취합하여 투표 현황을 관리한 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였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약 61조 및 상벌규정과 선거관리규정 94조 6항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규율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계의결요구서

대상자	성 명	노재옥
	소 속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대표자 노재옥)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02-920-5159)
위반조항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50조(선거운동 금지사항)	
징계사유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이 금지 된 투표기간에, 선거 중립의무를 가지는 단위조직에서, 투표 참여시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에 특정 후보 이름과 해당 후보의 공보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만을 적시하여 해당 후보에 투표하면 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심각한 규정위반 선거운동 행위가 이루어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약 61조 및 상벌규정과 선거관리규정 94조 6항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규율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엄교수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위원장 귀하

